

農家調查結果

農地稅制 改善案에 대한 農民들의 反應과 要求

金 敏 男

前責任研究員, 農政輿論室

李 成 珪

研究員, 農政輿論室

- I. 머리말
- II. 調査概要
- III. 分析結果
- IV. 要約과 結論

I. 머리말

이 調査는 政府가 마련, 9월 定期國會에서의 立法을 목표로 하고 있는 農地稅制 改善案에 대한 農民들의 反應을 파악, 앞으로의 立法方向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農地稅는 벼(甲類농지세)와 果樹, 채소 등 特殊作物(乙類농지세)에 대해 매기는 地方稅의 하나로서 市郡稅로 부과, 징수되고 있다. 이 농지세에 의한 年間 稅收는 83年 기준 886억 원으로 郡稅 1,689억 원의 52.5%나 차지하고 있으며 擔稅農家도 전체 217萬戶의 39%나 되는 84萬 7천戶에 이르고 있다.

擔稅者나 稅收의 범위 및 규모, 地方財政 및 地域개발과 관련한 農地稅의 역할과 機能 등에 비추어 쉽사리 손댈 수 없는 稅制이기는 하나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는 農村經濟事情이나 擔稅환경으로 미루어 보면 稅制로서는 지나친 硬直性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法定定 이후 部分的인 손질은 몇 차례 있었지만 基本骨格은 그대로 둔 채여서 특히 納稅者인 農民들의 오랜 「民願」대상이 되어 왔다. 가령 本研究院의 駐農村 現地通信員들이 보내 오는 農政通信報告(1983)에서 보면 현행 農地稅制에 대한 不滿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政府의 이번 農地稅制 改善案은 고치려고 하는 內容의 범위나 農民에 대한 受惠의 幅에 있어서 상당한 정책적 결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동안 농지세에 대한 舉論이 있을 때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課稅標準, 基礎控除額, 稅率, 最低稅率 등을 모두 손질했고 甲類와 乙類를 統合, 所得課稅化하는 한편 徵收方法을 現金納으로 統一하였다(表2 참조).

또 이 개선안이 立法化, 施行되게 되면 農地稅에서 745억 원, 住民稅에서 56억 원 등 모두 801억 원의 農家稅負擔輕減을 가져오고 전체 受惠農家は 84萬 7천戶에 이를 것으로 政府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改善의 여지는 있을 수 있고 특히 擔稅者인 農民의 입장에서 더욱 그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農地稅制改善案에 대한 농민들의 전반적인 반응을 파악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 앞으로의 立法과정에도 어떤 方向제시의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II. 調查概要

### 1. 調查對象者

본연구원 農政輿論調查 현지통신원으로 위촉된 2,284명을 調查對象者로 하였으며 이들의 道別 分布와 應答率은 <表 1>과 같다.

그런데 조사대상자인 本研究院의 農政輿論調查 現地通信員들은 농촌에서 篤農家로 인정되는 농민과 農村指導所 및 農漁民團體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농민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農村社會에서 여론지도층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地域社會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전체 농민들이나 그 지역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耕作規模나 學歷과 같은 속성에서 보면 농촌사회의 평균수준을 다소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 2. 調查方法

설문지에 의한 우편조사.

### 3. 調查期間

1984年 6월 29일~7월 15일.

### 4. 調查事項

가. 改善案이전 現行 農地稅制의 問題點에대한 認識

- ① 現행 농지세제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
- ② 現행 농지세제의 잘못된 점

나. 農地稅制改善案에 대한 농민들의 認知度

자세한 改善內容을 現行制度와 比較하여 보면 아래 <表 2>와 같다.

다. 農地稅制改善案에 대한 농민들의 反應

라. 改善案에 대한 농민들의 改善要求內容

- ① 농지세제 改善案 項目別 개선 요구내용
- ② 농지세제 改善內容 이외의 補完 요구내용

### 5. 分析方法

회송된 조사표의 응답내용을 SPSS에 의해 전산처리했으며 응답자의 연령, 학력, 경작규모 등을 獨立變數로 하고 應答者의 意思를 從屬變

表 1 應 答 者 의 道 別 分 포

구 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계 주	계
통신원 수(명)	265	138	167	274	248	382	405	337	68	2,284
응답자 수(명)	154	89	101	173	161	237	255	219	36	1,425
응답비율(%)	58.1	64.5	60.5	63.1	64.9	62.0	63.0	65.0	53.0	62.4
응답자도별분포(%)	10.8	6.2	7.1	12.1	11.3	16.6	17.9	15.4	2.5	100.0

表 2 농지세제 개선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개 선
과 세 대 상	감류(벼)와 울류(과수, 채소, 인삼, 연초 등)로 분리	현행 감류와 울류를 통합과세
기 초 공 제	감류: 수입금액에서 115만원 공제 울류: 소득금액에서 34만원 공제	사업소득세와 같이 소득금액에서 연 144만원 공제
과 세 표 준	감류: 수입금액 울류: 소득금액	실소득 기준으로 적용
세 율	감류: 6~10% (3단계) 울류: 10~20% (3단계)	사업소득세와 같이 6~55% (16단계)
최저세율 (6%)	15만원까지 적용	사업소득세와 같이 180만원까지로 확대조정
납 부 방 법	감류: 물납 (6대도시는 현금납) 울류: 현금납	현금납

表 3 응답자의 연령층별 분포

구 분	20 代	30 代	40 代	50~60 代	計
응 답 자 수 (명)	98	218	593	516	1,425
구 성 비 (%)	6.9	15.3	41.6	36.2	100.0

表 4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

구 분	國 卒	中 卒	高 卒	大 卒	計
응 답 자 수 (명)	221	544	575	84	1,425
구 성 비 (%)	15.5	38.2	40.4	5.9	100.0

表 5 응답자의 경작규모별 분포

구 분	零 細 農	小 農	中 農	大 農	計
응 답 자 수 (명)	27	278	689	431	1,425
구 성 비 (%)	1.9	19.5	48.4	30.2	100.0

\* 영세농(0.5ha 미만), 소농(0.5~1.0ha), 중농(1.0~2.0ha), 대농(2.0ha 이상).

數로 하여 階層間 比較分析을 하였다.

### 6. 應答者의 階層別 分佈

응답자의 연령층별, 학력별, 경작규모별 분포는 <表 3, 表 4, 表 5>와 같다.

## Ⅲ. 分析結果

### 1. 改善案 이전 現行 農地稅制의 問題點에 대한 認識

#### 가. 現行 農地稅制에 대한 農民들의 認識

이에 대한 設問內容은 「귀하께서는 그동안 農地稅制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일이 계십니까?」로서 응답결과의 도별, 연령별, 학력별, 경작규모별 분포는 <表 6~9>과 같다.

총응답자 1,425명 중 이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1,311명, 무응답은 114명이었다.

<表 6~9>에서 現行 農地稅制에 「잘못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73.2%, 「잘못 없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6.8%이다. 그동안 대다수의 농지세 납세농민들이 농지세제에

表 6 현행 農地稅制에 대한 농민들의 認識(道別)

단위: 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세 주	계
잘못 있다고 생각	101 (70.1)	52 (64.2)	72 (76.6)	118 (75.2)	112 (76.2)	171 (79.5)	159 (68.8)	153 (73.9)	22 (62.9)	960 (73.2)
잘못 없다고 생각	43 (29.9)	29 (35.8)	22 (23.4)	39 (24.8)	35 (23.8)	44 (20.5)	72 (31.2)	54 (26.1)	13 (37.1)	351 (26.8)
계	144 (11.0)	81 (6.2)	94 (7.2)	157 (12.0)	147 (11.2)	215 (16.4)	231 (17.6)	207 (15.8)	35 (2.7)	1,311 (100.0)

表 7 현행 農地稅制에 대한 農民들의 認識(年령別)

단위: 명(%)

	20 대	30 대	40 대	50~60대	계
잘못 있다고 생각	58(63.0)	160(78.8)	415(76.4)	327(69.1)	960(73.2)
잘못 없다고 생각	34(37.0)	43(21.2)	128(23.6)	146(30.9)	351(26.8)
계	92(7.0)	203(15.5)	543(41.4)	473(36.1)	1,311(100.0)

表 8 현행 農地稅制에 대한 농민들의 認識(學歷別)

단위: 명(%)

	국 출	중 출	고 출	대 출	계
잘못 있다고 생각	129(62.9)	355(71.4)	420(78.8)	56(72.7)	960(73.2)
잘못 없다고 생각	76(37.1)	142(28.6)	112(21.2)	21(27.3)	351(26.8)
계	205(15.6)	497(37.9)	532(40.5)	77(5.9)	1,311(100.0)

表 9 현행 農地稅制에 대한 농민들의 認識(耕作規模別)

단위: 명(%)

	영 세 농	소 농	중 농	대 농	계
잘못 있다고 생각	14(58.3)	155(65.7)	465(71.8)	326(80.9)	960(73.2)
잘못 없다고 생각	10(41.7)	81(34.3)	183(28.2)	77(19.1)	351(26.8)
계	24(1.8)	236(18.0)	648(49.4)	403(30.7)	1,311(100.0)

대해 不滿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이를 道別로 보면 全南이 「잘못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比率이 가장 높고, 다음 忠北, 全北, 忠南, 慶南, 京畿, 慶北, 江原, 濟州의 順으로 나타났다(表 6 참조).

年齡別로 보면 「잘못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比率은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40代, 50~60代, 20代의 順으로 나타났다(表 7 참조).

學歷別로 보면 「잘못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比率은 高卒이 가장 많고 다음 大卒, 中卒, 國卒의 順으로 되어 있다(表 8 참조).

耕作規模別로 보면 「잘못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比率은 大農層일수록 높게 나타났다(表

9 참조).

나. 現行 農地稅制의 잘못된 점

이에 대한 設問內容은 「그동안 農地稅制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점이 있다면 구체적인 內容을 빈 칸에 간단히 적어 주십시오」로서 道別, 耕作規模別로 본 응답내용은 <表 10, 表 11>과 같다. 이는 主觀式 應答을 類目化하여 정리한 것이다.

총응답자 1,425명 중 이 질문에 응답한 사람은 918명, 무응답은 507명이었다.

<表 10, 表 11>에서 「現行 農地稅制의 잘못된 점」으로서 「기초공제액을 實所得에서 제하지 않

表 10 現行 農地稅制의 잘못된 점(道別)

단위 : 명 (%)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基礎控除額을 實所得에서 裁하지 않고 總 수입에서 公제한다.	21 (20.8)	16 (32.7)	9 (13.2)	33 (29.5)	25 (22.7)	50 (31.1)	39 (25.7)	30 (21.0)	9 (40.9)	232 (25.3)
作況과 土質을 고려하여 地租 등급 및 기준수량을 정확히 산출한 다음 세액을 부과해야 한다.	25 (24.8)	16 (32.7)	29 (42.6)	25 (22.3)	17 (15.5)	26 (16.1)	42 (27.6)	34 (23.8)	9 (40.9)	223 (24.3)
누진세율로 세부담이 과중하다.	12 (11.9)	2 (4.1)	2 (2.9)	18 (16.1)	19 (17.3)	23 (14.3)	14 (9.2)	14 (9.8)	0	104 (11.3)
기초공제액을 물가인상률 만큼 올리거나 현물기준으로 해야 한다.	10 (9.9)	2 (4.1)	3 (4.4)	6 (5.4)	12 (10.9)	11 (6.8)	21 (13.8)	21 (14.7)	1 (4.5)	87 (9.5)
도시의 갑근세보다 세부담이 너무 많다.	13 (12.9)	2 (4.1)	4 (5.9)	10 (8.9)	11 (10.0)	21 (13.0)	8 (5.3)	14 (9.8)	0	83 (9.0)
소작도 포함함으로써 農地稅 부과 대상이 되었다.	9 (8.9)	2 (4.1)	2 (2.9)	1 (0.9)	3 (2.7)	11 (6.8)	9 (5.9)	8 (5.6)	1 (4.5)	46 (5.0)
農地稅의 減免幅을 확대해야 한다.	2 (2.0)	2 (4.1)	6 (8.8)	5 (4.5)	11 (10.0)	4 (2.5)	4 (2.6)	7 (4.9)	1 (4.5)	42 (4.6)
水害·旱害  피해 및 적자영농에 대한 세금면혜택이 사실상 없다.	3 (3.0)	5 (10.2)	4 (5.9)	6 (5.4)	4 (3.6)	1 (0.6)	7 (4.6)	5 (3.5)	0	35 (3.8)
二重 납부되는 경우가 있다.	1 (1.0)	0	2 (2.9)	6 (5.4)	5 (4.5)	4 (2.5)	5 (3.3)	2 (1.4)	0	25 (2.7)
다른 세금은 現金納입에 농지세만 現物 납부이다.	3 (3.0)	2 (4.1)	0	1 (0.9)	2 (1.8)	4 (2.5)	2 (1.3)	2 (1.4)	0	16 (1.7)
갑류에 비해 율류세율이 높다.	2 (2.0)	0	4 (5.9)	1 (0.9)	0	2 (1.2)	1 (0.7)	2 (1.4)	1 (4.5)	13 (1.4)
기초공제를 갑류·율류로 구분한 것은 모순이다.	0	0	3 (4.4)	0	0	1 (0.6)	0	2 (1.4)	0	6 (0.7)
其 他	0	0	0	0	1 (0.9)	3 (1.8)	0	2 (2.4)	0	6 (0.6)
계	101 (11.0)	49 (5.3)	68 (7.4)	112 (12.2)	110 (12.0)	161 (17.5)	152 (16.6)	143 (15.6)	22 (2.4)	918 (100.0)

表 11 現行 農地稅制의 잘못된 점(耕作規模別)

단위 : 명 (%)

	영 세 농	소 농	중 농	대 농	계
基礎控除額을 實所得에서 裁하지 않고 總 수입에서 公제한다.	8(66.7)	37(24.0)	100(22.4)	87(28.4)	232(25.3)
作況과 土質을 고려하여 地租 등급 및 기준수량을 정확히 산출한 다음 세액을 부과해야 한다.	3(25.0)	32(20.8)	122(27.4)	66(21.6)	223(24.3)
누진세율로 세부담이 과중하다.	0	8(5.2)	51(11.4)	45(14.7)	104(11.3)
기초공제액을 물가인상률 만큼 올리거나 현물기준으로 해야 한다.	0	26(16.9)	43(9.6)	18(5.9)	87(9.5)
도시의 갑근세보다 세부담이 너무 많다.	0	11(7.1)	39(8.7)	33(10.8)	83(9.0)
소작도 포함함으로써 農地稅 부과대상이 되었다.	0	11(7.1)	21(4.7)	14(4.6)	46(5.0)
農地稅의 減免幅을 확대해야 한다.	0	8(5.2)	20(4.5)	14(4.6)	42(4.6)
水害·旱害  피해 및 적자영농에 대한 세금면혜택 사실상 없다.	0	6(3.9)	23(5.2)	6(2.0)	35(3.8)
二重 납부되는 경우가 있다.	0	4(2.6)	11(2.5)	10(3.3)	25(2.7)
다른 세금은 現金納입에 농지세만 現物 납부이다.	0	4(2.6)	7(1.6)	5(1.6)	16(1.7)
갑류에 비해 율류세율이 높다.	1(8.3)	4(2.6)	4(0.9)	4(1.3)	13(1.4)
기초공제를 갑류·율류로 구분한 것은 모순이다.	0	2(1.3)	3(0.7)	1(0.3)	6(0.7)
其 他	0	1(0.6)	2(0.4)	3(0.9)	6(0.6)
계	12(1.3)	154(16.8)	446(48.6)	306(33.3)	918(100.0)

고 總收入에서 공제하였다」의 應答比率이 가장 커서 25.3%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作況과 土質을 고려하여 土地等級 및 基準收穫量을 정확히 算出한 다음 稅額을 賦課

해야 한다」로 24.3%, 「累進稅率로 세부담이 過重하였다」 11.3%, 「기초공제액을 物價引上率만

큼 올리거나 現物基準으로 해야 했다」 9.5%, 「都市의 甲勤稅보다 세부담이 많았다」 9.0%,

「小作도 포함함으로써 농지세 賦課對象이 되었다」 5.0%, 「農地稅의 減免幅을 擴大해야 했었다」 4.6%, 「水害·旱害피해 및 赤字營農에 대한 稅減免혜택 사실상 없다」 3.8%, 「二重납부 되는 경우가 있다.」 2.7%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한편 <表 10>에서 道別로 보면 「基礎控除額을 實所得에서 제하지 않고 總收入에서 공제하였다」의 경우 濟州에서 그 比率이 가장 높았고 다음 江原, 全南, 忠南, 慶北 등의 順이었고, 「作況과 土質을 고려하여 土地等級 및 基準收穫量을 정확히 算出한 다음 稅額을 賦課해야 한다」는 그 比率이 忠北, 濟州, 江原, 慶北, 京畿 등의 順이었으며, 「累進稅率로 세부담이 過重하였다」의 경우는 그 比率이 全北, 忠南, 全南, 京畿, 慶南의 順으로 나타났다.

<表 11>에서 耕作規模別로 보면 「기초공제액을 實所得에서 제하지 않고 總收入에서 공제하였다」의 경우 零細農層에서 그 比率이 가장 높았고 다음 大農, 小農, 中農의 順이었으며, 「作況과 土質을 고려하여 土地等級 및 基準收穫量을 정확히 算出한 다음 稅額을 賦課해야 한다」

는 그 比率이 中農, 零細農, 大農, 小農의 順이었다. 「累進稅率로 세부담이 過重하였다」의 경우는 그 比率이 大農層일수록 높게 나타났고 零細農의 응답은 없었다.

2. 農地稅制改善案에 대한 農民들의 認知度

이에 대한 設問內容은 「귀하께서는 이번에 農地稅制를 고치기로 한 정부측의 改善案 內容을 알고 계십니까?」로서 이의 道別, 學歷別, 耕作規模別 응답결과는 <表 12, 表 13, 表 14>와 같다.

총응답자 1,425명 중 이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1,416명, 무응답은 9명이었다.

<表 12, 表 13, 表 14>에서 「農地稅制 改善案에 대한 농민들의 認知度」를 보면 「잘 알고 있다」가 35.8%, 「대강은 알고 있다」가 56.0%로 알고 있다는 사람이 91.8%로 나타나 매우 높은 認知率을 보여 주고 있다. 반면 「잘 모르겠다」가 7.1%, 「전혀 모르겠다」가 1.1%로 모르겠다는 사람은 8.2%에 불과하였다.

<表 13>에서 學歷別로 보면 「잘 알고 있다」의

表 12 農地稅制 改善案의 認知度 (道別)

단위: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계 주	계
잘 알고 있다	58(37.7)	32(36.8)	40(40.0)	60(39.4)	63(39.4)	83(35.6)	88(35.6)	69(31.5)	14(38.9)	507(35.8)
대강은 알고 있다	80(51.9)	46(51.7)	59(58.0)	97(56.4)	84(53.1)	141(59.7)	140(55.7)	125(57.5)	21(58.3)	793(56.0)
잘 모르겠다	14(9.1)	10(11.5)	2(2.0)	12(7.0)	12(7.5)	10(4.3)	23(9.0)	17(7.8)	1(2.8)	101(7.1)
전혀 모르겠다	2(1.3)	0	0	3(1.7)	0	1(0.4)	2(0.8)	7(3.2)	0	15(1.1)
계	154(10.9)	88(6.2)	101(7.1)	172(12.1)	159(11.2)	235(16.6)	253(17.9)	218(15.4)	36(2.5)	1,416(100.0)

表 13 農地稅制 改善案의 認知度 (學歷別)

단위:명(%)

	국 출	중 출	고 출	대 출	계
잘 알고 있다	57(25.8)	190(35.2)	223(38.9)	38(45.2)	508(35.8)
대강은 알고 있다	139(62.9)	303(56.1)	309(54.2)	41(48.8)	792(56.0)
잘 모르겠다	22(10.0)	42(7.8)	33(5.8)	4(4.8)	101(7.1)
전혀 모르겠다	3(1.4)	5(0.9)	6(1.1)	1(1.2)	15(1.1)
계	221(15.6)	540(38.2)	571(40.3)	84(5.9)	1,416(100.0)

表 14 農地稅制 改善案의 認知度(耕作規模別)

단위 : 명 (%)

	영 세 농	소 농	중 농	대 농	계
잘 알고 있다	12(44.4)	85(30.9)	242(35.3)	168(39.3)	507(35.8)
대강은 알고 있다	9(37.0)	165(59.3)	389(57.0)	230(53.5)	793(56.0)
잘 모르겠다	2(7.4)	24(8.7)	46(6.7)	29(6.8)	101(7.1)
전혀 모르겠다	3(11.1)	3(1.1)	7(1.0)	2(0.5)	15(1.1)
계	26(1.8)	277(19.6)	684(48.3)	429(30.3)	1,416(100.0)

表 15 개선안全般에 대한 反應(道別)

단위 : 명 (%)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계 주	계
극히 만족스럽다	29 (19.0)	13 (15.1)	23 (23.0)	33 (19.9)	39 (24.4)	50 (21.2)	51 (20.2)	50 (22.9)	4 (11.1)	292 (20.8)
대체로 만족한다	78 (51.0)	51 (59.3)	54 (54.0)	100 (59.5)	84 (52.5)	137 (58.8)	136 (53.8)	119 (54.6)	20 (55.6)	779 (55.4)
그저 그렇다	38 (24.8)	17 (19.8)	18 (18.0)	29 (17.3)	26 (16.2)	38 (16.3)	58 (22.9)	41 (18.8)	9 (25.0)	274 (19.4)
만족스럽지 못하다	8 (5.2)	5 (5.8)	5 (5.0)	6 (3.6)	11 (6.9)	8 (3.4)	8 (3.2)	8 (3.7)	3 (8.3)	62 (4.4)
계	153 (10.9)	86 (6.1)	100 (7.1)	168 (11.9)	160 (11.4)	233 (16.6)	253 (18.0)	218 (15.5)	36 (2.6)	1,407 (100.0)

表 16 개선안全般에 대한 反應(學歷別)

단위 : 명 (%)

	국 출	중 출	고 출	대 출	계
극히 만족스럽다	42(19.4)	119(22.1)	121(21.3)	9(10.8)	291(20.8)
대체로 만족한다	116(53.5)	306(56.8)	303(53.3)	55(66.3)	780(55.4)
그저 그렇다	53(24.4)	94(17.4)	114(20.1)	13(15.7)	274(19.4)
만족스럽지 못하다	6(2.8)	20(3.7)	30(5.3)	6(7.2)	62(4.4)
계	217(15.4)	539(38.3)	568(40.3)	83(5.9)	1,407(100.0)

表 17 개선안全般에 대한 反應(耕作規模別)

단위 : 명 (%)

	영 세 농	소 농	중 농	대 농	계
극히 만족스럽다	5(20.0)	58(21.4)	148(21.6)	81(19.0)	292(20.8)
대체로 만족한다	12(48.0)	157(57.9)	375(54.8)	235(55.0)	779(55.4)
그저 그렇다	8(32.0)	47(17.3)	137(20.0)	82(19.2)	274(19.4)
만족스럽지 못하다	0	9(3.3)	24(3.5)	29(6.8)	62(4.4)
계	25(1.8)	271(19.3)	684(48.6)	427(30.3)	1,407(100.0)

경우 高學歷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으며 「대강은 알고 있다」와 「잘 모르겠다」의 경우는 低學歷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表 14〉에서 耕作規模別로 보면 「잘 알고 있다」의 경우 零細農層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 大農, 中農, 小農의 順이었으며 「대강은 알고 있다」의 경우는 소농, 중농, 대농, 영세농의 順으로 나타났다.

### 3. 農地稅制改善案에 대한 農民들의 反應

改善案 전반에 대한 反應과 稅減免規模(801억원)에 대한 反應으로 구분하여 調査를 실시하였으나 응답결과가 거의 비슷하여 本稿에서는 改善案全般에 대한 反應만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設問內容은 「이번에 政府가 내놓은 農地稅制改善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로

서 이의 道別, 學歷別, 耕作規模別 응답결과는 <表 15, 表 16, 表 17>과 같다.

총응답자 1,425명 중 이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1,407명, 무응답은 18명이었다.

<表 15, 表 16, 表 17>에서 「改善案全般에 대한 農民들의 反應」을 보면 「극히 만족스럽다」가 20.8%, 「대체로 만족한다」가 55.4%로 만족한다는 사람이 76.2%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農地稅制改善案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 반면에 「그저 그렇다」는 19.4%,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겨우 4.4%에 불과하였다.

이를 <表 15>에서 道別로 보면 그 비율이 「극히 만족스럽다」의 경우 全北, 忠北, 慶南, 全南, 慶北의 順으로 나타나고 「대체로 만족한다」는 경우는 忠南, 江原, 全南, 濟州, 慶南의 順으로 나타났다.

<表 17>에서 耕作規模別로 보면 그 비율이

「극히 만족스럽다」의 경우 중농, 소농, 영세농, 대농의 順으로 나타나고 「대체로 만족한다」는 경우는 小農, 大農, 中農, 零細農의 順으로 나타났다.

4. 改善案에 대한 農民들의 改善 要求內容

여기서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改善案에 대해 높은 滿足度를 보이고는 있지만 일부 농민들이 改善案에 대해 改善 및 補完要求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立法 및 그 施行에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 내용을 간추려 본다.

가. 農地稅制改善案 項目別 改善要求內容

1) 改善案의 內容 : 甲類農地稅와 乙類農地稅를 統合하여 單一農地稅로 정한 점.

이에 대한 改善要求를 한 사람은 176명(총응답자의 12.4%)이었으며 이들이 주장한 要求內容을 道別, 耕作規模別로 보면 <表 18, 表 19>와

表 18 改善案에 대한 改善要求 內容 (道別)

단위 : 명 (%)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계 주	계
갑·乙類 별도로 분리해야	12 (75.0)	6 (100.0)	10 (100.0)	20 (100.0)	14 (77.8)	33 (89.2)	39 (92.9)	23 (85.2)	0	157 (89.2)
통합할 경우 기초공제액 높여 주길	0	0	0	0	0	0	1 (2.4)	0	0	1 (0.6)
통합에 의한 누진율로 세부담 과중	1 (6.3)	0	0	0	3 (16.7)	3 (8.1)	1 (2.4)	0	0	8 (4.5)
율류농지세 해당없는 농가 별다른 혜택없다	2 (12.5)	0	0	0	1 (5.6)	1 (2.7)	1 (2.4)	3 (11.1)	0	8 (4.5)
'85년 시행 후 문제있으면 종전으로 환원	1 (6.3)	0	0	0	0	0	0	1 (3.7)	0	2 (1.1)
계	16 (9.1)	6 (3.4)	10 (5.7)	20 (11.4)	18 (30.2)	37 (21.0)	42 (23.9)	27 (15.3)	0	176 (100.0)

表 19 改善案에 대한 改善要求 內容 (耕作規模別)

단위 : 명 (%)

	영 세 농	소 농	중 농	대 농	계
갑·乙類 별도로 분류	3(100.0)	30(90.9)	74(88.1)	50(89.3)	157(89.2)
통합할 경우 基礎控除額 높여 주길	0	0	0	1(1.8)	1(0.6)
통합에 의한 累進率로 세부담 과중	0	1(3.0)	4(4.8)	3(5.4)	8(4.5)
乙類 農地稅 해당 없는 농가 별다른 혜택없다	0	1(3.0)	5(6.0)	2(3.6)	8(4.5)
1985년 시행 후 문제 있으면 종전으로 환원	0	1(3.0)	1(1.2)	0	2(1.1)
계	3(1.7)	33(18.8)	84(47.7)	56(31.8)	176(100.0)

表 20 改善要求內容 (道別)

단위: 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계 주	계
基礎控除額 높여 주길 바람	23 (79.3)	14 (87.5)	16 (69.6)	32 (82.1)	22 (73.3)	30 (76.9)	41 (91.1)	40 (76.9)	4 (80.0)	222 (79.9)
耕地面積에 비례 공제요	0	1 (6.3)	2 (8.7)	1 (2.6)	1 (3.3)	0	1 (2.2)	0	0	6 (2.2)
부양가족 참작해 높여 주길 바람	2 (6.9)	0	5 (21.7)	5 (12.8)	2 (6.7)	4 (10.3)	2 (4.4)	6 (11.5)	1 (20.0)	27 (9.7)
순수익에서 기초공제액 책정	1 (3.4)	0	0	1 (2.6)	0	0	0	2 (3.8)	0	4 (1.4)
매년 物價上昇을 감안해 높여 주길 바람	3 (10.3)	0	0	0	2 (6.7)	1 (2.6)	1 (2.2)	3 (5.8)	0	10 (3.6)
甲類만 144만원 乙類는 율류대로	0	1 (6.3)	0	0	1 (3.3)	2 (5.1)	0	1 (1.9)	0	5 (1.8)
現物로 기초공제액 算出	0	0	0	0	2 (6.7)	2 (5.1)	0	0	0	4 (1.4)
계	29 (10.4)	16 (5.8)	23 (8.3)	39 (14.0)	30 (10.8)	39 (14.0)	45 (16.2)	52 (18.7)	5 (1.8)	278 (100.0)

表 21 改善要求內容 (耕作規模別)

단위: 명(%)

	영 세 농	소 농	중 농	대 농	계
基礎控除額 높여 주길 바람	2(66.7)	37(78.8)	110(79.1)	73(82.0)	222(79.9)
耕地面積에 비례 공제요	0	1(2.1)	2(1.4)	3(3.4)	6(2.2)
부양가족 참작해 높여 주길 바람	1(33.3)	5(10.6)	13(9.4)	8(9.0)	27(9.7)
순수익에서 基礎控除額 책정	0	0	3(2.2)	1(1.1)	4(1.4)
매년 物價上昇을 감안해 높여 주길 바람	0	2(4.3)	5(3.6)	3(3.4)	10(3.6)
甲類만 144만원 乙類는 율류대로	0	2(4.3)	2(1.4)	1(1.1)	5(1.8)
現物로 基礎控除額 算出	0	0	4(2.9)	0	4(1.4)
計	3(1.1)	47(16.9)	139(50.0)	89(32.0)	278(100.0)

같다.

〈表 18, 表 19〉에서 要求內容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甲·乙類 별도로 分類」로 89.2%이었고 그밖의 내용은 미미한 것이었다.

2) 改善案의 內容: 農地稅의 基礎控除額을 一般所得稅의 경우처럼 144만원으로 한 점

이에 대한 改善要求를 한 사람은 278명(총응답자의 19.5%이었으며 이들이 주장한 要求內容을 道別, 耕作規模別로 보면 〈表 20, 表 21〉과 같다.

〈表 20, 表 21〉에서 要求內容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基礎控除額 높여 주길 바람」으로서 79.9%이었다.

3) 改善案의 內容: 農地稅의 課標段階를 現行

의 3 단계제에서 16단계제로 바꾼 점.

이에 대한 改善要求를 한 사람은 94명(총응답자의 6.6%)이었으며 이들이 주장한 要求內容을 道別, 耕作規模別로 보면 〈表 22, 表 23〉과 같다.

〈表 22, 表 23〉에서 要求內容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너무 細分化됨, 단계를 줄여야」로 75.5%이었다.

4) 改善案의 內容: 稅率을 一般所得稅의 경우처럼 6%에서 55%까지로 細分化한 점.

이에 대한 改善要求를 한 사람은 54명(총응답자의 3.8%)이었으며 이들이 주장한 要求內容을 道別, 耕作規模別로 보면 〈表 24, 表 25〉와 같다.

〈表 24, 表 25〉에서 要求內容 중 가장 큰 비율

表 22 改善要求內容 (道別)

단위: 명 (%)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주	계
좀더 細分化	0	0	2 (33.3)	3 (21.4)	0	1 (5.0)	1 (5.6)	1 (12.5)	1 (50.0)	9 (9.6)
너무 세분화 됨, 단계를 줄여야	7 (87.5)	6 (100.0)	3 (50.0)	10 (71.4)	10 (83.3)	12 (60.0)	16 (88.9)	6 (75.0)	1 (50.0)	71 (75.5)
단계가 많아 稅額過重 우려	0	0	1 (16.7)	1 (7.1)	1 (8.3)	1 (5.0)	1 (5.6)	0	0	5 (5.3)
단계를 정하지 말고 金額基準으로	0	0	0	0	0	0	0	1 (12.5)	0	1 (1.1)
중전대로 환원	1 (12.5)	0	0	0	1 (8.3)	3 (15.0)	0	0	0	5 (5.3)
耕地面積에 따라 단계책정	0	0	0	0	0	3 (15.0)	0	0	0	3 (3.2)
계	8 (8.5)	6 (6.4)	6 (6.4)	14 (14.9)	12 (12.8)	20 (21.3)	18 (19.1)	8 (8.5)	2 (2.1)	94 (100.0)

表 23 改善要求內容 (耕作規模別)

단위: 명 (%)

	영 세 농	소 농	중 농	대 농	계
좀더 細分化	0	3(13.6)	1(2.8)	5(14.3)	9(9.6)
너무 세분화 됨, 段階를 줄여야	1(100.0)	18(81.8)	27(75.0)	25(71.4)	71(75.5)
단계가 많아 稅額 過重우려	0	0	3(8.3)	2(5.7)	5(5.3)
단계를 정하지 말고 金額基準으로	0	1(4.5)	0	0	1(1.1)
중전대로 환원	0	0	2(5.6)	3(8.6)	5(5.3)
耕地面積에 따라 단계책정	0	0	3(8.3)	0	3(3.2)
計	1(1.1)	22(23.4)	36(38.3)	35(37.2)	94(100.0)

表 24 改善要求內容 (道別)

단위: 명 (%)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주	계
너무 細分化되어 이해하기 어렵다	7 (100.0)	4 (66.7)	1 (33.3)	3 (42.9)	5 (83.3)	7 (63.6)	4 (44.4)	4 (80.0)	0	35 (64.8)
좀더 細分化	0	2 (33.3)	2 (66.7)	2 (28.6)	0	1 (9.1)	3 (33.3)	1 (20.0)	0	11 (20.4)
細分化로 累進率 우려됨	0	0	0	2 (28.6)	1 (16.7)	2 (18.2)	1 (11.1)	0	0	6 (11.1)
균등하게 누진율 없도록	0	0	0	0	0	0	1 (11.1)	0	0	1 (1.9)
耕地面積에 따라	0	0	0	0	0	1 (9.1)	0	0	0	1 (1.9)
計	7 (13.0)	6 (11.1)	3 (5.6)	7 (13.0)	6 (11.1)	11 (20.4)	9 (16.7)	5 (9.3)	0	54 (100.0)

表 25 改善要求內容 (耕作規模別)

단위: 명 (%)

	영 세 농	소 농	중 농	대 농	계
너무 細分化되어 이해하기 어렵다	0	6(85.7)	11(47.8)	18(75.0)	35(64.8)
좀더 細分化	0	1(14.3)	6(26.1)	4(16.7)	11(20.4)
세분화로 累進率 우려됨	0	0	5(21.7)	1(4.2)	6(11.1)
균등하게 累進率 없도록	0	0	0	1(4.2)	1(1.9)
耕地面積에 따라	0	0	1(4.3)	0	1(1.9)
計	0	7(13.0)	23(42.6)	24(44.4)	54(100.0)

表 26 改善要求內容 (道別)

단위: 명 (%)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계 주	계
現金 및 現物로 자유롭게 納付	21 (50.0)	5 (33.3)	14 (58.3)	22 (46.8)	29 (53.7)	16 (32.0)	27 (50.0)	25 (46.3)	1 (100.0)	160 (46.9)
現物로 納付	21 (50.0)	10 (66.7)	10 (41.7)	25 (53.2)	25 (46.3)	33 (66.0)	27 (50.0)	29 (53.7)	0	180 (52.8)
증전대로	0	0	0	0	0	1 (2.0)	0	0	0	1 (0.3)
계	42 (12.3)	15 (4.4)	24 (7.0)	47 (13.8)	54 (15.8)	50 (14.7)	54 (15.8)	54 (15.8)	1 (0.3)	341 (100.0)

表 27 改善要求內容 (耕作規模別)

단위: 명 (%)

	영 세 농	소 농	중 농	대 농	계
現金 및 現物로 자유롭게 納付	1(100.0)	27(49.1)	76(45.5)	56(47.5)	160(46.9)
現物로 納付	0	28(50.9)	91(54.5)	61(51.6)	180(52.8)
증전대로	0	0	0	1(0.8)	1(0.3)
계	1(0.3)	55(16.1)	167(49.0)	118(34.6)	341(100.0)

表 28 改善要求內容 (道別)

단위: 명 (%)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계 주	계
산간지·평야지 감안 소득조정	1 (14.3)	0	0	0	0	0	1 (33.3)	1 (7.7)	0	3 (6.4)
순수익에서 부과 되도록	5 (71.4)	3 (100.0)	4 (100.0)	5 (83.4)	4 (100.0)	7 (100.0)	2 (66.7)	11 (84.6)	0	41 (87.3)
耕地面積 基準에 따라	1 (14.3)	0	0	1 (16.7)	0	0	0	1 (7.7)	0	3 (6.4)
計	7 (14.9)	3 (6.4)	4 (8.5)	6 (12.8)	4 (8.5)	7 (14.9)	3 (6.4)	13 (27.7)	0	47 (100.0)

表 29 改善要求內容 (耕作規模別)

단위: 명 (%)

	영 세 농	소 농	중 농	대 농	계
산간지·평야지 감안 소득조정	0	1(10.0)	1(4.3)	1(7.7)	3(6.4)
순수익에서 부과되도록	1(100.0)	9(90.0)	21(91.3)	10(76.9)	41(87.3)
耕地面積 기준에 따라	0	0	1(4.3)	2(15.4)	3(6.4)
計	1(2.1)	10(21.3)	23(48.9)	13(27.7)	47(100.0)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너무 細分化되어 이해하기 어렵다」로 64.8%, 다음 「좀 더 細分化」 20.4%, 「細分化로 累進率 우려됨」 11.1%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5) 改善案의 內容: 農地稅의 納付方法을 증전에는 現物納付원칙으로 하던 것을 現金納付制로 바꾼 점.

이에 대한 改善要求를 한 사람은 341명(총 응답자의 23.9%)이었으며 이들이 주장한 要求內

容을 道別, 耕作規模別로 보면 <表 26, 表 27>과 같다.

<表 26, 表 27>에서 要求內容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現物로 納付」로서 52.8%이었으며, 그 다음이 「現金 및 現物로 자유롭게 納付」로 46.9%이었고, 「증전대로」는 0.3%에 불과하였다.

6) 改善案의 內容: 甲類農地稅의 課稅 표준을 米穀의 粗收入으로 하던 것을 米穀所得으로 하

表 30 改善要求 內容(道別)

단위: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계 주	계
所得金額擴大	2 (50.0)	3 (75.0)	4 (80.0)	4 (80.0)	5 (100.0)	4 (100.0)	7 (100.0)	11 (91.7)	0	40 (87.0)
최저稅率을 6%에서 더 낮출 것	2 (50.0)	1 (25.0)	1 (20.0)	1 (20.0)	0	0	0	1 (8.3)	0	6 (13.0)
계	4 (8.7)	4 (8.7)	5 (10.9)	5 (10.9)	5 (10.9)	4 (8.7)	7 (15.2)	12 (26.1)	0	46 (100.0)

表 31 改善要求 內容(耕作規模別)

단위:명(%)

	영 세 농	소 농	중 농	대 농	계
所得金額확대	1(100.0)	11(91.7)	16(84.2)	12(85.7)	40(87.0)
최저 稅率을 6%에서 더 낮출 것	0	1(8.3)	3(15.8)	2(14.3)	6(13.0)
계	1(2.2)	12(26.1)	19(41.3)	14(30.4)	46(100.0)

도록 바꾼 점.

이에 대한 改善要求를 한 사람은 47명(총응답자의 3.3%)이었고 이들이 주장한 要求內容을 道別, 耕作規模別로 보면 <表 28, 表 29>와 같다.

<表 28, 表 29>에서 要求內容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純收益에서 부과되도록」으로서 87.3%이었다.

7) 改善案의 內容: 最低稅率(6%)적용을 一般所得稅의 경우처럼 所得金額 180만원까지로 擴大 調整한 점.

이에 대한 改善要求를 한 사람은 46명(총응답자의 3.2%)이었다. 그 要求內容을 道別, 耕作規模別로 보면 <表 30, 表 31>과 같다.

<表 30, 表 31>에서 要求內容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所得金額 擴大」로서 87.0%이었으며, 다음이 「最低稅率을 6%에서 더 낮출 것」으로서 13.0%이었다.

나. 農地稅制改善內容 이외의 補完要求內容.

改善內容 이외에 불만족스럽거나 추가로 고쳤으면 하는 사람은 138명(총응답자의 9.7%)이었으며 이들이 주장한 응답내용은 290개이었다.

表 32 補完 要求 內容

內 容	人員數(명)	構成比(%)
稅免除 擴大	68	23.5
정확한 세액산출과 그 산출근거 명시	44	15.2
금년부터 施行	32	11.0
土地等級의 再조정	25	8.6
가족사항 고려 査定	25	8.6
累進率의  완화	24	8.3
農地稅 改善案에 대한 자세한 책자요망	19	6.6
과세표준을 地域別·作目別로 細分化	15	5.2
농산물 가격변동에 비례해 산출	12	4.1
납부기간 조정	9	3.1
稅額引下	7	2.4
累進率의  적용	6	2.1
세제개혁을 5년마다	2	0.7
基礎控除額을 現物로	1	0.3
耕作者만 납부	1	0.3
計	290	100.0

그 응답내용을 정리하면 <表 32>와 같다.

<表 32>에서 「補完要求內容」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稅免除擴大」로서 23.5%이었으며, 다음은 「정확한 稅額算出과 그 算出根據明示」로 15.2%, 그밖에 「금년부터 施行」 11.0%, 「土地等級의 再調整」, 「가족사항고려 査定」이 각기 8.6%, 「累進率의 완화」 8.3%, 「農地稅改善案에 대한 자세한 冊子요망」 6.6%, 「課稅標準을 地域別, 作目別로 細分化」 5.2%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 IV. 要約과 結論

### 1. 要 約

1) 現行 農地稅制에 잘못이 많다는 것이 대부분 農民들의 생각이다. 이들이 지적한 「잘못된 點」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基礎控除額을 實所得에서 除하지 않고 總收入에서 除한다.

② 基準收穫量의 產出에 있어서 作況과 土質 그리고 土地等級을 精確하게 考려하여야 한다.

③ 累進率로 稅負擔이 크다.

④ 기초공제액을 物價引上率만큼 올리거나 現物기준으로 해야 한다.

⑤ 都市의 소득세보다 稅負擔이 크다.

⑥ 小作(賃借)도 포함함으로써 農地稅부과 大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⑦ 농지세 減稅幅을 확대해야 한다.

⑧ 다른 稅金은 現金納인데 농지세만 現物納이다.

⑨ 水害·旱害피해 및 赤字營農에 대한 稅減免혜택이 事實上 없다.

⑩ 二重納付되는 경우가 있다.

2) 改善案에 대한 農民들의 認知度는 91.8%, 滿足度는 96.2%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3) 그러나 7개 주요 改善項目에 대해 農민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는 개선 要求內容을 제

시하고 있다. 즉 甲·乙類를 統合하여 單一稅로 한데 대해 「현행처럼 分離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해서 「기초공제액을 더 높여야 한다」, 「16단계로 된 課稅단계를 줄이고 累進率을 낮추어야 한다」, 「現金·現物納 등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등 모두 8개항에 걸친 개선요구사항이 제시되고 있다.

### 2. 結 論

앞으로의 改善과정에 있어서 基礎控除額의 輕우 所得稅의 事業所得者수준인 144萬원의 合理性 여부, 추가로 인정해야 할 控除項目, 공제액과 그 事由, 소득세의 각종 特別控除와 農業所得 중 非課稅所得과의 均衡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 課稅標準에 있어서 收入金額算定, 生産費 또는 必要經費認定範圍·基準·方法 등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3단계로 되어 있는 農地稅率을 16단계로 細分, 최저 6%에서 최고 55%로 고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앞으로 機械化 등을 통한 大單位 企業營農方式의 도입과 관련, 최고세율을 引下 調整하여 초과 누진의 부담을 덜어 주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妥當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小數意見이기는 하지만 이런 政府의 農地稅制改善案 및 그 方向에 대해 農民들이 제시한 正수방법 등 몇 가지 의견들은 입법과정에 상당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